

규정 산학협력 중점교원 운영규정

문서번호	TWP-A609
제정일자	2013. 02. 26.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5	페이지 1/4

목 차

부 칙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당	사무처장	취업처장	교무학생처장	산학입학처장	기획예산처 장	총장
서 명							
일 자							



규정

산학협력 중점교원 운영규정

문서번.	호	TWP	-A609
제정일	자	2013.	02. 26.
개정일:	자	2018.	02. 19.
개정번호	5	페이지	2/4

		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2013. 02. 26.	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규정 제정
1	2014. 03. 24.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소속, 지정기준, 책임강의시수 감면 등 개정
2	2015. 04. 27.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
3	2017. 01. 26.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일괄 개정(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 년트랙 전임교원 명칭 폐지)
4	2017. 06. 23.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운영, 관리 등의 업무 이관 → 산학협력처
5	2018. 02. 19.	- 201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면 개정 기획홍보처 → 기획처, 입학관리센터 → 입학처 학생처/취업지원처 → 학생취업처 - 전공주임교수 → 학과장 변경



규정

문서번호 TWP-A609 제정일자 2013. 02. 26. 개정일자 2018. 02. 19.

페이지

3/4

개정번호 5

산학협력 중점교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대학교 산학협력교육을 전담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학협력중점교원이라 함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산학협력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 교수자격 등에 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J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 의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교원은 산업체 경력과 관계없이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종류)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과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하다.

- ②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4조의2 제4항의 의거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 ③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의거 재직 중에 산학협력중점 교원으로 지정된 교원을 말한다.

제5조(소속 및 운영·관리) ①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전공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입학처, 산학협력단, 교무학생처 등 행정부처 또는 부속·부설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개정 2014.03.24., 2017.06.23.>

- ②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입학처, 산학협력단, 교무학생처 등 행정부처 또는 부속·부설기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 또는 학부에 소속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7.06.23., 2018.02.19.>
- 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산학입학처에서 담당한다. <신설 2017.06.23.>

제6조(지정 및 해지) ①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의 지정은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의2 제3항의 기간제 및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한다.<개정 2014.03.24. 2017.01.26.>

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에 의한 교원에 대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제7조(책임시수의 감면) ①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을 전담하기 위하여 책임강의



규정문서번호
제정일자조정 그 이 이 이 그 거개정일자

산학협력 중점교원 운영규정

제정일자 2013. 02. 26.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5 페이지 4/4

TWP-A609

시간의 30%이상을 경감한다.<개정 2014.03.24.>

제8조(의무)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사업무 등 우리대학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대학의 장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서 강의할 수 없다.
- 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까지 업무실적을 제출 하여야 한다.
- ④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우리 대학에서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역할) ① 현장실습, 현장견학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교육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②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통하여 가족회사 확충, 기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자문 등을 담당한다.
- ③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담당한다.
- ④ 산업기술인력의 재교육과 교내외에서 운영되는 각종 산학협력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을 담당한다.

제10조(신분보장)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임용기간 중 우리대학 전임교원의 책임과 신분을 보장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